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80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김영호·이병진·조계원

이학영 • 박홍근 • 이연희

권칠승 · 강경숙 · 박희승

백선희 • 박상혁 • 문대림

김문수 · 문정복 · 백승아

김준혁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 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의 정파성 및 겸직 의혹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과정 등 산적한교육 현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으며, 교육정책에 대한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가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인원을 다양화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국

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교육 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원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원을 각 2명씩 축소하고, 교원단체·교육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함(안 제3조).
- 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국민참여배심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위 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 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요안건을 부결한 경우 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재의결한 경우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함(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라.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참여배심 위원회는 위원회가 배심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과 재논의을 요청한 중요안건을 논의하되, 중요안건의 재논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함(안 제16조).

- 마.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역별·연령별·성별·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바.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듣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및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전단 중 "9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명은"을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4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며, 1명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인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2명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 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하 "중요안건"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 중요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다시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다시 의결한 중요안건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배심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참여위원회를"을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이하 "배심위원회"라 한다)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를 "그 밖에 배심위원회의 운영, 의결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 ② 배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논의한다.
- 1.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
-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요안건이 부결되어 배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한 사항
- ③ 배심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다수결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 ④ 배심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배심위원회에 회부된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된 중요안건은 다시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배심위원회의 위원 등) ① 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배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제1호의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배심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사람

- 2.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 ③ 배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심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배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및 해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를 위원회 및 배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복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국민참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참여위원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민참여배 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 | | | |
| 략) | 행과 같음) | | | |
|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 | ③ | | | |
| 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 | | |
|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 | |
|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 | | | | |
| 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 | | | | |
|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 | | | |
| 다. | | | | |
| 1. 국회가 추천하는 <u>9명</u> (상임위 | 1 <u>7명</u> | | | |
| 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 | | | |
|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 | | |
| 다. |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 | | |
| | 가 추천하고, 4명은 그 외의 | | | |
| | 교섭단체가 추천하며, 1명은- | | | |
| | | | | |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u>5명</u> (상임 | 2 <u>3명</u> | | | |
| 위원 1명을 포함한다) | | | | |
| 3. 교육부차관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 |
| |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 | | | |
| | 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 | | |
| | 영유아 전문가 1인 | | | |

- 4. (생략)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 6. 7. (생략)

<신 설>

<신 설>

④ ~ ⑧ (생 략)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 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 조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 ⑥ (생략)

제15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 4. (현행과 같음)
- -----3명
- 6. · 7. (현행과 같음)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2명
- ④ ~ ⑧ (현행과 같음)

면 수렴・조정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6 조에 따른 국민참여배심위원회 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2)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u><신 설></u>

<신 설>

<신 설>

-----. <u>다만, 제10조에 따른</u>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하 "중요안건"이라 한다)은 재 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 중요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다시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 배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다시의결한 중요안건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

③ ~ ⑥ (생 략)

-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 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 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결한다. 이 | 경우 위원 | 원회는 | 배심 |
|--------|-------|-----|-----|
| 위원회에서 | 의결된 | 결과를 | - 존 |
| 중하여야 한 | 다. | | |

- <u>⑥</u> ~ <u>⑨</u>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 제16조(국민참여배심위원회) ① -

- --<u>국민참여배심위원회(이하</u> "배심위원회"라 한다)를----.
- ② 배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논의한다.
- 1.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가 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하기로 한 사항
-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요안건이 부결되어 배심위원회에재논의를 요청한 사항
- ③ 배심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17조제3항 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다수결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 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된

①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 다.

⑤ <u>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u> <u>운영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 설>

것으로 본다.

④ 배심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배심위원회에 회부된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된 중요 안건은 다시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⑤ <u>그 밖에 배심위원회의 운영,</u> <u>의결 방법 및 절차 등에</u>-----

제16조의2(배심위원회의 위원 등)
① 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 원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제1호의 위원은 전체 위원 수 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 다.

1. 배심위원회의 업무에 참여 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 집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사람 2. 교육·문화·언론·고용·산 업 · 복지 · 과학기술 등 각 분 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③ 배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 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 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심위 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 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배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및 해촉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 ①・② (생 제17조(전문위원회)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전문위원회는 제13조제5항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든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를 위원회 및 배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전문위원회는 복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